
최근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2023. 2. 1.

서울대학교
(감사팀)

차 례

I. 예산·회계 분야	1
II. 시설·물품·재산관리 분야	6
III. 교무·학사 분야	12
IV. 조직·인사 분야	15

예산·회계 분야

☑ 수입대체경비사업 등의 수입금 지연 세입

- 세입 발생 시에는 수입징수원(분입수입징수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원(분입수입징수원)은 지체없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입 결의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수입금을 발생 즉시 법인회계로 세입하지 않고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부만 법인회계로 세입하였으며, 나머지 수입금은 기관 수입금 계좌에 잔액으로 보관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수입금 미세입 및 직접 사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 ○○○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이나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지원금, 수강료 등의 수입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보관금 계좌에서 지출함.
 - ○○○ 기관은 학술지 등의 기고자로부터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수령하여 다음 회차 학술지 발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 및 기관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법인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세입함.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저작권 관리 부적정

- 지식재산을 창출한 교직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본교 지식재산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무발명으로 신고한 저작권 수입은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하는데도,
 - ○○○ 기관은 본교 명의로 학술지 등의 저작물을 발간한 후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으로 해당 저작물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와 직접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수입 19,906,908원을 이와 관련 없는 수입대체경비사업이나 발전기금회계로 세입하였으며, 201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저작권 수입 91,390,576원을 각 출판사와 정산하지 아니하여 수입금 세입을 누락함.
 - ○○○ 기관은 서울대학교 재원을 투입하여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소와 학과 명의로 발간한 학술지와 서적 등의 저작권 수입을 연구소장 및 학과장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수령·관리함.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 보관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보관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출납결의서 및 증빙 서류를 비치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발생한 과실금은 법인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는데도,

- ○○대학은 출납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학과(부)장의 결재로 출납결의서를 작성하여 학과(부)의 출납 업무를 처리하고, 학과(부)의 출납 업무시 출납결의서 상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대학 행정실장 소관의 12개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세입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관리 규칙, 서울대학교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보관금 관리 및 보직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 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은 반드시 지급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교수 보직수행경비는 「서울대학교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의 대상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 모든 수입금은 법인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 ○○○○ 기관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 수입금 일부를 지출 절차를 통해 임의로 위 기관 보관금 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위 보관금 계좌의 자금을 재원으로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개산금 지급 부적정**

-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

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 지급할 수 있고, 개선급으로 한 경우에는 정지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대학은 개선급 지급대상이 아닌 비용을 임의로 개선하여 지급하고, 정지요건 확정 후에도 즉시 정산하지 않고 5~6개월이 지나서 정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영 부적정

- 기관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도,
- ○○○ 기관에서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운영 중인 사업의 신규 이용자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일부 서비스는 사실상 운영이 종료되는 등 위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 검토·심의 등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교내 연구과제 형식의 보직수당 지급 부적정

- 보직교수는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보직에 대한 보직수행경비를 지원 받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대해 소속 기관

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 ◇◇◇에서는 보직교수의 소관업무에 대해 별도의 과제공고 및 심사 등의 절차 없이 기관 집행부에서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보직교수들에게 부여하고, 연구비의 대부분을 연구원(보직교수)에게 월정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교내 연구과제 형식으로 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급 기준, 서울대학교 학칙]

☑ 교내 연구과제 관리 소홀

-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하고,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타당성 및 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여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 소속 교수 A는 □□□에서 지원하는 ■■■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음에도 위 과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선정과정에서 과제 중복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또다시 교내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민간간접비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

- 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등 회의 수당은 자기 소관 업무 관련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데도,
 - ▼▼▼에서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체 성과평가 기준과 달리 개인별 간접비 기여금액과 연구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보직 수행, 연구소 행사 기획 및 참석 등에 대하여 소속 교원들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II

시설 · 물품 · 재산관리 분야

☑ 공사 계약 및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 계약담당직원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등 참조)를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처리 시에는 법령에 따라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정산한 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2019. 8. 및 2019. 12.에 2건, 62,376,000원의 공사를 4건

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부터 2019. 12.까지 3개 업체(Aa, Ab, Ac)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동일 또는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3개 업체 상호 간에 제출되는 비교 견적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부터 2019. 12.까지 13건의 공사(총 공사비 219,264,377원)에 대하여 별도의 제 경비 정산 없이 처리하여 보험료 5,819,893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에서는 2015. 3.부터 2020. 2.까지 시행한 37건의 공사(총 공사비 650,516,590원)에 대하여 정산 서류 없이 준공 처리하여 공사 제 경비 중 보험료 4,155,362원 및 폐기물 처리비 11,900,405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 공사 제 경비 미정산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큰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관리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견적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총 2,833,180원을 사후 정산하지 않았고, ○○○기관은 환경관리비(폐기물 관리비)가 계상된 견적서를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종료 후 실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총 660,000원을 정산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 시설사업 시설관리국 사전기술검토 미이행

- 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기관 자체에서 집행 시 재원을 불문하고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과 총 시설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국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기관은 총 시설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면서 시설관리국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 물품 관리 소홀

- 단위기관에서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일체의 물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귀속하여야 하고, 비소모품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취득가액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물품관리 및 물품처분의 대상이 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발전기금회계에서 구입한 비소모품을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고, 50만 원 이상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취득금액 또는 취득수량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여 물품대장과 실제 물품이 수량이 불일치함에도 재물조사 시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물품관리지침,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지침]

☑ 미술품 관리 소홀

- 본교 내 미술품은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정을 정하도록 되

어있고, ○○○○의 소장품심의위원회는 미술품의 기증, 구매, 관리전환과 미술품의 적정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소장미술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7년부터 미술품 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안내 받았으나 2020년까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보유 미술품 총 717점 중 약 61%인 437점의 적정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소장미술품 중 2점은 소재불명, 2점은 작가가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등 미술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 소장품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서울대학교 ○○○○ 미술품 수집 및 관리 세칙 등]

☑ 임대 관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의 재산을 서울대학교 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관련 규칙에 따른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임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임대가 승인된 경우 임대차 기간 등을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 임대료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대학교의 재산을 총장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총장은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기관은 총장의 승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없이 학외 기관에 소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 기간의 제약 없이 무상으로 소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 교원 창업 벤처기업 특허 출원 부적정

-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하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야 하는데도,
 - ○○○의 A교수는 본인이 공동 발명한 특허 17건을 산학협력단에 발명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발명진흥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 공간사용료 등 징수 업무 소홀

-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을 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미납 공간사용료 등을 징수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2년 이상 공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메일로만 독촉 고지를 하는 등 수입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 공용차량 임의 사용

- 업무용 차량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교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서울대학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하는데도,
 - ●●●의 B는 공용차량을 △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교통 관리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 채권 회수 업무 소홀

○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을 해야 하며, 납부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 등 4개 기관에서는 기기 사용료와 용역료, 그리고 부당이득금 등의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은 채권을 임의로 결손 처리하는 등 채권 회수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음.

- 이에 수입징수원 및 채권관리원의 직무 및 역할 범위가 모호하고, 채권의 관리방법, 관리기관, 회수 및 결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본부 소관부서에서 이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안내함.

(「법인회계 수입금 관리 안내」, 재무과-3280, 2021. 3. 22.)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III

교무·학사 분야

☑ 장학금 미보고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장학금 내역은 총장(장학복지과)에게 보고하여 대학공시자료와 대학평가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통

- 합행정정보시스템(장학)에 지급 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15. 1학기부터 2019. 1학기까지 해외연수 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555,444,200원(57명) 및 2015. 1학기부터 2017. 2학기까지 지급한 장학금 601,000,000원(228명)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통합행정 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 외국인 유학생 학적관리 미흡

- 학교의 장은 유학이나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적·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이나 연수가 끝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데도,
- 외국인 학생의 본교 수학과 학사 지도 등을 담당하는 ●●●은 각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및 제적 등의 학적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각 대학(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업무절차 미흡 및 전산 시스템 부재로 2015. 3. 1.부터 2020. 8. 31.까지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 신고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6건(13명, 6,24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 수업 출석 관리 부적정

- 각 대학(원)의 교무부학장은 대학의 학생 출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출석업무 등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는 감사, 민원 등 증빙자료로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대학은 2017학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개설된 교과목 1,782개 중 1,008개 교과목의 학생 출석 및 수업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

☑ 휴·보·대강 계획서 관리 소홀

- 학기 중에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 예정일 10일 전까지 국외여행계획서, 휴·보·대강 계획서, 초청장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 ○○대학은 공무국외여행 기간 중 수업이 있는 교원에게 휴·보·대강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335건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 교양 교과목 운영 부적정

- 전임교원은 정규학기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학년도별로 18시간의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수의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공동강의는 학점을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참여 교수별로 책임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교원은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보수, 수당 등 인건비

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 기관은 정규 교양 교과목을 강의한 교수들에게 1시간의 책임시간을 임의로 0시간으로 수정하여 책임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법인회계에서 강의개발비를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지침, 교수별 수업담당시간 입력 매뉴얼(학사과),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IV 조직 · 인사 분야

☑ 부실학회 참가 부적정

-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구 및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인회계 등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술대회의 주관기관, 평판, 부실운영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학술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아야 하며,
- WASET 등 부실학회 관련 교육부 실태조사 및 조치 후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구자들이 부실 또는 약탈적 학술대회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가이드, 부실학회 리스트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도,
 - ▲▲▲ 소속 연구교수 B, C는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부실학회로 관리하는 학술대회에 여비를 지원받아 참가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 **공무국외여행 여비 부정 수령**

○ 교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를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 ▽▽▽ 소속 연구교수 D는 학회참석 및 유관기관 방문일정에 대한 여비를 신청하면서 학회가 취소되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고 학회참석 2일에 대한 여비(체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 소속 A교수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없이 해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료를 발전기금회계에서 지급받은 후 실제로는 해당 공무국외여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 **교원 연구년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년 활동보고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소속 B교수 등은 연구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00건은 연구년 활동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177일~1,455일)하여 제출함.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 교원의 학기 중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 및 공무외 국외여행을 합하여 학년 통산 21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고, 정부기관의 초청이나 협조지명을 받아 정부(국가)의 국외 공식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표로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또는 대학 업무수행을 위해 총장이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은 국외여행 기간 산입 제외 사유로 볼 수 없는 교원의 국외 여행(출장) 일수를 국외여행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여, 학년 통산 21일을 초과하는 교원의 국외여행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 **겸직 미허가**

○ 교원은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데도,

- ○○대학 일부 교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학회 회장 및 이사 등 임원직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 **겸직 직원 복무 처리 부적정**

○ 직원은 법령, 정관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학 출강 등 겸직을 허가 받은 직원은 강의 장소로의 이동거리·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가·조퇴 등의 근무상황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은 겸직 직원이 겸직 시 근무상황을 전혀 신청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직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적정

- 직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 ○○대학은 직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장 허가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 공무국외여행허가 지침]

☑ 직원 채용광고 부적정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하는데도,
 - ○○기관은 직원 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각각 안내한 후 이 중 2명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급여를 225만 원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관련 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